

18_비밀을 지키는 전략! 상생협력법의 이해

#1

이번 시간에는 「상생협력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생협력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

※ 「상생협력법」의 개요

2016년 6월 4일에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자율적으로 도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상생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요 거래처인 대기업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며, 금전적 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에 「상생협력법」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 상생협력의 대상인 위-수탁 거래

「상생협력법」하에 정의되는 '상생협력'의 개념은, 필요에 의해 서로 협력하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상호 이익과 협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간 거래는 제조 의뢰, 판매 및 용역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른 물품이나 공정의 수리 의뢰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 상황에서 특정 거래들을 '수탁·위탁 거래'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탁'은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행위를, '위탁'은 타인에게 의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상생협력법」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협력 계약 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생협력법」에서는 이처럼 기술자료의 무리한 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에 종종 기술자료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거래를 위해 제품의 사양이나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세부적인 제품의 사양이나 도면의 요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 기술자료 제공 규정의 필요성

만약 거래가 약속대로 잘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핵심 기술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정보를 받은 상대방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제품 개발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며, 이런 행위는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력법」은 '위·수탁거래'를 보호 대상으로 삼아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

양 당사자들 간에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제공하는 기술경영 상의 정보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비밀유지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 비밀유지계약이란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하게 요청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이 정보가 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양측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8

※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때 들어가야 하는 내용

1. 제공되는 기술자료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정의
2. 비밀유지 의무의 구체적 내용
3.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조건
4. 기술자료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

#9

※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개념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소기업인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는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기업이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자신들이 이미 독자적으로 연구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사용됩니다.

#10

※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상세

기업은 핵심 기술자료나 영업비밀을 임치함으로써 자사의 기술 개발 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하고자 수탁기업은 기술자료를 위탁기업에 제공하기 전에 자신들의 기술자료를 미리 임치할 수 있습니다.

※ 「상생협력법」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7.>

#11

※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진행하는 방법

현재, 기술자료 임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술자료 임치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치 등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치되는 기술자료의 내용과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 제작되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기술개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술이 언제 개발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자료의 제작년월일을 정확히 기록하여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2

만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임치제도 요구에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면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상생협력법」은 이러한 임치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탁기업이 기술자료 임치 요청으로 인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3

※ 「상생협력법」 준수사항

※ 「상생협력법」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만약, 불이익을 줄 경우, 수탁기업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해당 위탁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중소기업인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탁기업이 계약 내용을 어기고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15

※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시의 법적 조치

만약 위탁기업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또한, 위탁기업

에게 재발 방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제27조), 이러한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공표하고 수탁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이때, 기술자료 유용에 관한 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처리합니다(제28조).

#16

※ 기술자료를 유용했을 때의 손해배상 청구 규정

※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 15., 2021. 8. 17.>

#17

※ 손해배상 책임과의 차이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적 접근 방식에는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자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생협력법」에서는 기술자료 유용에 대해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 차원에서 설정되었습니다.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어떻게 기술자료를 유용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보다 잘 할 수 있는 위탁기업에게 이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18

※ 행위태양 입증

위탁기업이 자신들이 기술자료 유용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 위탁기업은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 상태를 밝혀야 합니다(제40조의 4). 이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